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6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9월 13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도시철도 노선별 역사의 구조, 역무실 설치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“고객안전실”이라는 용어를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」에 명시되어 있는 “역무시설”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함
- 서울시 도시철도는 각 기관별(서울교통공사, 서울시메트로9호선(주), 우이신설경전철(주), 남서울경전철(주))로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“도시철도운영자가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시장에게 보고”하도록 수정함

2. 주요골자

- 도시철도운영자는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·비치하도록 함(안 제5조제5항)

-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5조제6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 제5항 중 “고객안전실”을 “역무시설”로 한다.

제5조 제6항 중 “시장이 정한다”를 “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위원회안)
제5조(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) ① ~ ④ (생략)	제5조(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제5조(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<u>고객안전실</u> 에 구비·비치하여야 한다.	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<u>역무시설</u> _____
<신 설>	⑥ 제5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시장이 정한다</u> .	⑥ _____ _____ _____ _____ <u>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정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홍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·비치하여야 한다

⑥ 제5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